##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146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최은석・김기현・이인선

이종욱 • 고동진 • 박충권

조경태 · 정동만 · 박덕흠

김희정 • 구자근 • 송언석

김태호 • 유영석 • 강대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음.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분을속인 광고게시자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광고게시자와 부동산소유자 간 관계 등의 안내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유권을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만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등의 경우에 통신판매 중개자는 이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 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의 거래횟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이버몰을 통하여부동산을 포함한 특정한 재화등에 대한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판매하려는 재화등의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의 정보를 소비자 또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한 재화등의 범위,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비자에게"를 "소비자 또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20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나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 략)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통신판매중개의 거래횟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이		
	버몰을 통하여 부동산을 포함		
	한 특정한 재화등에 대한 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판매하려는 재화등의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의 정보를		
	소비자 또는 거래의 당사자들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한 재화등의 범위, 제공하		
	여야 하는 정보 등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		
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	② <u>다음 각</u>		

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 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 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 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u>는 경</u>
<u> 우로</u> -				
			· <u>소비자</u>	
거래!	의 당	사자들여	<u>게 게</u>	

-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 실과 다른 경우
- 2. 제20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 매중개의뢰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나 거래의 당사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③ ④ (현행과 같음)